리모델링 사용검사 신청서

(제1쪽)

일
)
)
)

행위허가 전체 내용

	구분	행위 내용				
공동주택	당초					
	변경					
	구	분	설치현황	단지 내	현황	단지 외 현황
		당초				
	시설 종류	변경				
부대시설		당초				
		변경				
		당초				
		변경				
	구 분		주 용도	면적(m²)	개소	그 밖의 현황
	시설 종류	당초				
		변경				
분양시설		당초				
		변경				
		당초				
		변경				
「주택법」 제66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검사를 신청합니						

다.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장・군수・구청장 귀하

신청인	1. 감리자의 감리의견서(「건축법」에 따른 감리대상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수수료
제출서류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없음
제출서류	2. 시공자의 공사확인서	없음

Ⅰ. 일반건축물 소유자 현황(일반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소유자 성명(명칭)	
주건축물의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소유권 지분
동 명칭 및 번호	주 소	
	·	
		,
		-
		-
		/
		-
		/
		/
		/
		/
		-
		/
		-
		/

Ⅱ. 집합건축물 소유자 현황(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소유자 성명(명칭)		
주건축물의	층	동	생년월일(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소유권	구분
동 명칭 및 번호	구분	구분	주 소	지분	기호
				/	
				/	
				_ /	
				/	
				/	
				/	
				/	
				/	
				/	
				_	
				/	
				-	

Ⅲ. 집합건축물 전용/공용 면적표(집합건축물인 경우에만 적습니다)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m²)
	구분기호			ı	1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m²)
	구분기호				
전용/공용	주/부	층 구분	구조	용도	면적(m²)

	신청	!안내	
제출하는 곳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시・군・구	처리 부서	건축 또는 주택담당 부서

근거법규

「주택법」 제66조제7항

「주택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

유의사항

「주택법」 제102조제12호 사용검사필증을 발급받지 아니하면 그 건축물 등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집니다.

작성방법

별지 제23호서식의 작성방법에 따릅니다.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